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 (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2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10월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소속 지청 포함)에서 휴직자, 출산휴가자, 시간제전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 예정 직급: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 '한시 7호'는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 모집예정 인원: 1명

※ 지원자는 해당 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담당 업무 및 채용기간은 대체 근무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모집예정 세부내역

등급	모집관서	모집인원	근무시간	직렬	근무지역
한시 7호	중부청 (고용관리과)	1명	주 35시간	기록연구	인천시

※ 근무시간은 1일 7시간으로 함(09:00~17:00, 10:00~18:00 등, 각각 점심시간 1시간<근무시간 아님> 포함)

※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유형에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 모집인원이 10명 이상인 유형에만 의사상자 등 가점 적용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2003.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응시 자격 요건 (1개 이상 해당자)	자격증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말함 ※ 자격증은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학위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우대 요건	경력	○ 응시자격 충족 후 직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기간에 따른 차등 배점, 최대 50개월		
	자격증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컴퓨터활용능력(1급)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 동일분야 자격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우대		
가점요건		○ 공공기관 등 근무경력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모집인원에 따라 적용)		

※ 응시요건 등 관련 유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자격증 기준, 학위 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1 하여 응시
- 학위 등(졸업증명서)은 학위증 등(사본) 제출 건에 한하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소지자 인정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고,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우리 부 경력이라도 반드시 제출)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반드시 명시 발급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 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증명서류 및 보완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경력은 불인정될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4. 선발 방법

○ 1차: 서류전형

- 모집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모집 유형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및 우대요건

1. 자기소개서, 학업·경력사항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2. 우대 요건

- 관련 분야 근무 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종류별·건별 차등 우대)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스, 舊 컴퓨터활용능력 3급, 舊 워드프로세스 2,3급)

3. 공공기관등 근무경력 가산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ilo.go.kr)에 지정된 기관에 한함

4. 취업지원 대상자 등 가산점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의사상자 유족, 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	5% 또는 3%	

*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유형에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모집인원이 10명 이상인 유형에만 의사상자 등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전화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 상황에 따라 화상 회의 웹사이트를 활용한 비대면 화상 면접 실시 가능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23. 10. 11.(수) ~ 10. 16.(월)
 - 접수방법: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대체인력 선발공고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원칙,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 제출)
 - ① 온라인 첨부(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4층 고용관리과(인사담당)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23. 10. 16.(월)
- ※ 자격요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는 **필히 온라인 첨부**

6. 제출 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 나라일터 응시자 기본 서식 입력
 - * 이력서상의 실무 경력은 상세하게 기재하되, 기재된 경력 사항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됨을 유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 미제출 시 해당 평정점의 최하점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개별사항(해당시 제출)

- 학위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기타 자격증 소지자 및 취업보호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는 가급적 **최근(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 **관련서류를 온라인 첨부한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에 '원본 서류' 제출(방문·우편으로 원본을 제출한 경우 제외)**

7.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3. 10. 26.(목)

○ 면접시험(예정): '23. 11. 1.(수)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3. 11. 2.(목)

※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제출자료 진위여부 조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8. 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주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 봉급 기준액(주 40시간 근무기준): (한시 7호) 월 2,158,500원
-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 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 고용보험은 당사자 희망 시 가입

9. 유의사항

-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관련 행정기관 휴직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각 기관의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향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 기간에 대한 소득 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 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인사담당(☎ 032-460-4507)

붙임1 직무 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
기록물관리(기록연구)	한시임기제 7호

주요 업무	○ 기록물 정리, 이관, 공개 재분류, 평가 및 폐기 등 ○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관 운영 ○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공공기록물의 보존관리 및 전자적 처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 ○ 기록물 보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소양 등 ○ 정부 정책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경험 ○ 컴퓨터 활용(한글, 엑셀 등) 능력
-------	--

응시 자격 요건 (1개 이상 해당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자격증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말함 ※ 자격증은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학위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우대 요건	경력	○ 응시자격 충족 후 직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직무 관련 분야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 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경력 ※ 경력기간에 따른 차등 배점, 최대 50개월									
	자격증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table><tr><td>기술사</td><td>기사</td><td>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td><td>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td></tr><tr><td>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td><td>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td><td>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컴퓨터활용능력(1급)</td><td>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td></tr></table> ※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우대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컴퓨터활용능력(1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컴퓨터활용능력(1급)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12.1.1. 통합 이전 1급 포함)								
가점	○ 공공기관 등 근무경력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모집인원에 따라 적용)										

붙임2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감염예방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 등 자격 및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 자료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 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질병관리본부</u>	<u>감염병 여부 조회</u> (면접심사 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 목적)	<u>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u>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u>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u> (응시자 경력 회사, 학위 수여 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대 보험 기관, 자격증 관리 기관 등)	<u>공무원 채용 관리</u> (채용 심사를 위해 제출한 학력(학위)·경력·자격증 사항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자격 득실 사항·소득 금액 증명 사항 진위 여부 회신 등)	<u>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u> (성명, 생년월일, 응시자 기재 경력, 자격증, 학위, 및 4대 보험 자격 득실 사항·소득 금액 증명 사항 등)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붙임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 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 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